

#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38,644,656	52,159,340
일반회계	1,512,192,567	45,365,777
특별회계	226,452,089	6,793,563
공기업특별회계	206,631,796	6,198,9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435,045	1,063,05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796,751	1,973,90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5,400,000	3,162,000
기타특별회계	19,820,293	594,60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7,849	12,53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913,661	207,4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63,115	133,893
수질개선특별회계	6,504,213	195,1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521,455	45,64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869,82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6,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